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604호
2. 발 의 자 : 임춘대 의원(찬성의원 15명)
3. 발의일자 : 2025년 03월 31일
4. 회부일자 : 2025년 04월 02일

II. 제안이유

-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산업은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국내 핀테크 중심지로 부상했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서의 역할은 부족해 핀테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핀테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유망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핀테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바.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핀테크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됨.

2. 핀테크산업 현황과 조례안의 입법배경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비롯하여 디지털은행까지 광범위한 확장성을 갖춘 신산업 분야임.
-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금융산업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부상한 핀테크는 빠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전통적인 금융업을 해체하는 등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음.¹⁾
- 한편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2024년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는 956억달러로 2023년 1,198억달러에 비해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3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국내 핀테크산업은 2014년 말부터 금융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규제 완화, 소비자들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용도,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 노력 등에 따라 2014년 131개에서 2023년 635개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임²⁾.
- 그러나 B2C(Business to Consumer)³⁾ 모델을 중점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국내 핀테크산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국내 내수 규모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 등이 핀테크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⁴⁾
- 다만 서비스 고도화 및 해외진출의 기반이 되는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많은 국내 핀테크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바, 투자처 확보를 위한 기업의 기술 혁신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투자유치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한편 서울시는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서울을 아시아 핀테크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핀테크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추진한 이래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핀테크랩(2018. 04 개관)과 제2핀테크랩(2023. 01 개관) 운영, 지자체 최초 핀테크 교육사업인 서울핀테크아카데미(2018년 최초 개최), 핀테크산업 관련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한 서울핀테크위크(2023년 최초 개최)⁵⁾ 등을 통해 핀테크기업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한국핀테크지원센터(2024), 「2023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3) 기업이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핀테크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기술, 데이터, 인프라 등을 제공하는 B2B와 구분됨.

4) 삼성KPMG(2024), 「2024 한국핀테크 동향보고서」, 금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

5) 2006년 ‘서울국제금융 컨퍼런스’로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 서울핀테크위크로 행사명을 변경해 핀테크 산업을 집중 조명하는 행사로 개최하고 있음.

- 그 결과 서울시는 2023년 기준으로 국내 635개 핀테크기업의 75.6%에 해당하는 480개 기업이 위치할 정도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핀테크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 핀테크산업 지원정책 개요 >

서울핀테크랩	▪ 개관: 2018년 4월 ▪ 소재: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위워크 여의도점 6개층-4·5·6·8·17·19층) ▪ 기업지원: 성장기(창업 7년 이내) 핀테크기업의 스케일업 및 예비유니콘 기업 육성 ▪ 입주기업: 97개사 ▪ 운영: 민간위탁(수탁기관: (유)제피러스랩, 위탁기간: '24.4.~'26.12.) ▪ 실적(2024년): 기업매출 1,515억원, 투자유치 770억원, 고용창출 738명 ▪ 2025년 예산: 8,044,491천원
제2서울핀테크랩	▪ 개관: 2023년 1월 ▪ 소재: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8층, 11층 ▪ 기업지원: 초기(창업3년 이내) 핀테크기업의 발굴 및 육성, 성장지원 ▪ 입주기업: 31개사 ▪ 운영: 민간위탁(수탁기관: 씨앤티테크, 위탁기간: '25.1.~'26.12.) ▪ 실적(2024년): 기업매출 108억원, 투자유치 42억원, 고용창출 63명 ▪ 25025년 예산: 2,067,296천원
서울 핀테크아카데미	▪ 대상: 금융·핀테크 재직자, 예비창업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 내용: 핀테크산업 분야의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운영: 디지털금융 전문 교육기관 용역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실적('18~'24년): 핀테크 분야별 고급 실무인력 공급 확대, 총 534명 수료 ▪ 2025년 예산: 173,000천원
서울핀테크워크	▪ 대상: 국내외 금융기관·투자사, AI·핀테크산업 관계자 등 ▪ 내용: 컨퍼런스, 투자유치·네트워킹, 대시민 프로그램 등 핀테크산업의 교류협력의 장 마련 ▪ 운영: 용역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실적('23~'24년): 참석인원 9,797명(현장 2,467명, 온라인 7,330) ▪ 2025년 예산: 400,000천원

-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핀테크 지원 정책은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관련 기업 육성 등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아닌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 방침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핀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동 조례안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핀테크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핀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서울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조례안의 세부 내용

가. 조문 구성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핀테크산업의 육성과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구성 및 형식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핀테크산업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핀테크산업을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의 규정은 조례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음.⁶⁾
- 현재 핀테크산업은 널리 통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적인 정의가 없고, 관련 법령 등에서도 핀테크 및 핀테크산업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안 제2조는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이 가능해 그 범위가 현재보다 확장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의 특성상 이를 협의로 정의할 경우 조례 제정 당시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관련 유망 기업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이는 핀테크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혀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향후 관련 법령 등에서 핀테크산업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안 제7조는 유망 핀테크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금융규제 관련 컨설팅 및 법률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핀테크산업

6) 법제처(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금조달, 투자처 확보, 네트워킹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핀테크기업을 발굴하여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음.
- 또한 국내 핀테크산업은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로 인해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규모 축소 등으로 핀테크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처 및 해외 바이어 발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라.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안 제8조 및 제9조)

-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정책 현안 등을 자문하기 위한 ‘핀테크산업 정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 외에 위촉직 위원으로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함.

- 그리고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며 위원은 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바,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⁷⁾의 ‘위원회 신설 시 비상설 원칙’을 충족하고 있음.
- 또한 핀테크산업 분야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⁸⁾의 위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4. 종합의견

-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망한 국내 핀테크기업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 성장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그러나 서울시의 핀테크 지원 정책은 직접적인 법·제도적 근거가 아닌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 방침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핀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상황임.

7)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7.24.>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15.>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에 동 조례안은 전세계 금융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인 핀테크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 핀테크산업의 성장과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신현두	2180-8055